

대한감정평가법인 – 캄보디아 VMC 간 감정평가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

대한감정평가법인과 캄보디아 VMC는 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 감정평가, 부동산 연구,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양 기관의 협력 확대 및 관계 강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양 기관이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감정평가, 부동산 연구,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분야에 대한 협력의 기초를 확립함과 동시에 관련 부동산 업계의 축적된 경험, 전문인력 및 전문지식을 상호 교류·협력함으로써 양 기관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업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내용)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.

1. 감정평가, 부동산 연구,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을 위한 관련 자료, 정보 및 축적된 지식 등의 상호간 지원
2. 양 기관의 경험 및 전문적 지식 등에 대한 교류
3. 부동산 및 감정평가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
4.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조①(학술교류를 위한 상호방문) 1. 제2조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, 양 기관은 학술 및 실무업무 교류를 목적으로 학술대표단을 구성하여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측은 상대방에 1개월 전에 일정 및 규모를 통보하며, 세부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 2. 상호방문 시 방문을 받는 기관은

방문대표단과 협의하여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.

- 가. 감정평가업 및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나 기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소개
- 나. 방문을 받는 기관의 감정평가 관련 세미나, 워크샵 등의 참석 협용
- 다. 양 기관 상호간의 업무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표단의 실무연수 제공
- 라. 상호 필요에 의한 감정평가 관련 회의 개최

②(지속교육사업) 제2조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부동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교육사업 협력 및 자금조달 방안을 찾는다.

③(출판물 교환) 제2조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판물 및 관련 법규 개정 내용과 기타자료를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방 당사자의 결정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공한다.

제4조(재정)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 내용, 계획 및 상호 방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.

제5조(효력의 발생, 수정, 종료시기)

1.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이후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3개월 이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2. 각 기관은 부동산 및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3.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동의하에 수정될 수 있다.

본 양해각서는 2014년 2월 22일 시엠립에서 서명되며, 한국어 · 크메르어 · 영어 각 버전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 내용 번역상의 차이점이 있을 경우 영어 버전을 우선으로 한다.

2014년 2월 22일

대한감정평가법인

VMC

대표 홍순열

홍순열

대표 찬나 디쓰

Channath